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한국한식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한식대학교 설치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57호)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0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8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8
나. 제정안의 체계	13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및 설립(안 제1장 및 제2장)	15
나. 조직(안 제3장)	21
다. 재무회계 등(안 제4장)	27
라. 학사 등(안 제5장)	36
마. 보칙 및 벌칙(안 제6장 및 제7장)	45

I. 제안경위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457호)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2.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109호)

가.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2.

다.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457호)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K-푸드 열풍으로 한식 및 한식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하고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학과 단위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 중심의 한식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의 계승이 어렵습니다. 한식과 한식문화의 창의적 발

전, 산업·문화·외교 분야와 연계한 전략적 인재 양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로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의무 현장실습과 캠퍼스 실습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인력을 배출합니다.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랑스 요리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 형태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한식의 보급과 산업화·세계화는 물론,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109호)

현행 「한식진흥법」은 한식(韓食)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 및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식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식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인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등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같이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고 전통과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 도시인 경주에 한식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한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식의 세계적 확산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457호)

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조정·감독함(안 제5조).

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한식대학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둠(안 제23조).

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 및 한식의 해외보급

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함(안 제26조).

2.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109호)

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대학교를 법인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며,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되, 한식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총장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고, 부설교육기관에서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식의 해외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할 수 있음(안 제26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음식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토대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국가브랜드로서, 오늘날에는 관광·문화콘텐츠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음.

최근 글로벌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5년에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임.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적인 한식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품 제조업” 및 “음식점업·주점업” 인력 부족률은 각각 3.7%, 4.8%로 산업인력 부족률이 10년 이상(2021년 상반기 제외) 전 산업(2.5%) 대비 높으며,¹⁾ 특히 숙련 인력과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 공급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²⁾되고 있음.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자국 음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기획 하에 요리학교를 설립³⁾하여 체계적인 인재

1) 2024년 상반기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25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3.)

2) 2024년 한식산업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한식당 운영시 “전문인력 공급”에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비중이 16.8%로 전체의 2위로 조사되었고, 한식 연구개발(R&D) 진행시 애로사항으로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비중이 20.1%로 조사됨.

3) 해외 요리학교 현황

양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므로, 한식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한식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⁴⁾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한식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교육부 중심의 일률적 규율에서 벗어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하에 한식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한식 분야의 고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리·외식·식품영양 등 개별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더 나아가, 한식대학교를 통하여 한식의 산업화·세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국제교류, 식품안전 등 한식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종합적·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식대학교의 설립은 한식 및 한식산업을 농업·식품·외

-
- (이태리 알마) 파르마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주도로 설립된 요리 교육 기관으로 지방 정부로부터 부지(궁전) 및 조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아 설립
 - (이태리 미식과학대학) 지방 정부(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는 부지(궁전) 및 조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공하고, 슬로우푸드 협회가 교육 운영
 - (이태리 ICIF) 농림부 장관 기획 하에 주 정부 및 관련 협회 등이 협력하여 외국인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이태리 요리를 교육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
 - (프랑스 앙스티튀 라이프(구 폴보퀴즈))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셰프 폴보퀴즈가 협업하여 엘리트 양성을 위해 만든 요리교육 대학으로 설립 당시 인프라를 정부에서 지원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2026. 3.)

- 4) 특수법인이란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다.

*출처: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5.)

식·관광·문화산업 등과 연계한 국가 기반산업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한식대학교를 설치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현재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등이 존재하여 한식대학교 기능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과명에 “한식” 또는 “K-푸드”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7개 확인됨.⁵⁾

② 또한, 「한식진흥법」⁶⁾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광주김치아카데미” 등 5개 기관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⁷⁾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식진흥원은 영세프 실무교육⁸⁾ 등 한식 분야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5) 강서대학교 한식경영학과, 영산대학교 K-푸드조리전공,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한식문화산업학과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6) 「한식진흥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7) 사단법인 광주김치아카데미, 영산대학교(K-Food 조리전공), 우송대학교(한식·조리과학전공), 전주대학교(한식조리학과), 수원과학대학교(글로벌한식조리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8) 전국 2·4년제 고등교육기관 대상 한식 교육과정 희망 기관 공모를 통해, 강사비, 실습 및 현장 체험비, 식재료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식 대학교 졸업생에게 정책지원을 우대할 근거를 규정하여, 한식대학교 졸업생에 비하여 유사학과 졸업생 등이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반대의견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한식대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재정 부담임.

현 시점에는 구체적인 규모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의 범위 및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최근에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례에서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교직원 200명 규모 학교의 설립 및 운영('19~'31)에 총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운영비용 전망]

구 분	태 동 기 개교준비 ('19~'21년)	육 성 기 편제완성 ('22~'25년)	성 장 기 추가확장 ('26~'31년)	누 계
투 자 비 (부지비 제외, 누계)	설립비 5,136억원 (3,466억원)	확장비 2,744억원 (6,210억원)	확장비 2,591억원 (8,801억원)	10,471억원 (-)
운 영 비	66억원	2,013억원	3,562억원	5,641억원
합 계	5,202억원	4,757억원	6,153억원	16,112억원

*자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 한국전력공사, 2019.6.

참고로, 제정안에 대해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

9) 이와 관련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등은, 특정 대학에만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대학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신설 대학 졸업생에게만 우대할 경우 기존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교육 기반을 갖춘 기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구서¹⁰⁾가 제출되었으며, 특수법인 대학설립에 관한 유사 법률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및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의 비용추계요구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 발의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및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각각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

한편,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필요성과 법안취지에 공감하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및 대학 현장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국고투입과 기존 교육인프라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등을 감안하여 한식대학교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교육부는 고등교육제도의 통용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한식대학교의 수업연한, 학기 등 학사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령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④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 자산의 경직성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심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 신설에 제한적·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제정안의 체계

민형배·김석기의원안은 각각 제7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한식대학교 설치의 목적, ② 한식대학교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③ 한식대학교의 재무회계 및 학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보칙 및 벌칙 등을 규정하여 법 체계가 대체로 유사함.

다만, ① 민형배의원안은 한식대학교의 학위를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으로, 김석기의원안은 “전문학사” 과정으로 두는 점, ② 한식대학교의 소재지를 민형배의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김석기의원안은 “경상북도 경주시”로 규정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

한편, 민형배·김석기의원안은 가장 최근에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법 체계 및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체계]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장 설립	제2장 설립
제2조(법인)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제5조(지원·조정 등)	제5조(지원·육성 등)

제3장 조직	제3장 조직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제7조(총장)	제7조(총장)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제4장 재무회계 등	제4장 재무회계 등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5조(기부 등)	제15조(기부 등)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5장 학사 등	제5장 학사 등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교원의 임면)	제20조(교원의 임면)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제22조(학생)	제22조(학생)
제23조(학위과정 등)	제23조(학위과정 등)
제24조(학위수여)	제24조(학위수여)
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9조(「민법」의 준용)	제29조(「민법」의 준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2조(설립준비)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및 설립(안 제1장 및 제2장)

민형배·김석기의원안 제1장(총칙)은 이 법의 목적, 제2장(설립)은 한식대학교의 법적 성격, 설립 요건 및 지원·조정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여 한식(韓食)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제2조(법인)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한식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한식(韓食)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제2조(법인) ①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한식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3조(설립) ① 한식대학교의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특별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한식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한식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식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북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한식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한식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식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5조(지원·조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지원·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이 경우 한식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첫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한식대학교의 성격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하여 성립하도록 하며,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민법」 11)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서 해당 특수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수적이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고, 법인의 권리와 의무 범

11)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위를 정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필수적인 규정이자,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설립법의 일반적인 입법방식으로 보임.

둘째, 김석기의원안 제2조제2항은 한식대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형배의원안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그런데, 김석기의원안은 한식대학교의 학위수여 등 일부 규정¹²⁾만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간의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법률 간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한식대학교가 제정안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외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¹³⁾ 예산·결산의 공개¹⁴⁾ 등의 의무를 동시에 적용받는지 여부와 양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 시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3조제1항은 한식대학교의 주된

12)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13)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형배의원안)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김석기의원안)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고등교육기관들은 비록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 명에서 해당 특수법인이 어느지역에 설립될 것인지 예측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도 존재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특정하는 입법형식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입법례: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u>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u> 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위치로 특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관산업 기반, 국제 접근성, 지역 간 형평성 등 입지 선정에 대한 관련 연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넷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한식대학교를 설립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지원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이 아닌 동 제정안을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수한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교육부 이외 부처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사례는 한국에너지공대 및 과학기술원들 등 특수법인 대학 이외에 각 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음.

[교육부 외 부처 설립·운영위탁 또는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4년제 기준)]

유형	소관부처	학교명	설립목적	학교급별	근거법령
특별법에 의한 국립교육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간부 (경위)양성	대학수준(4년)	경찰대학 설치법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각군장교 (소위)양성	대학수준(4년)	사관학교 설치법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장교 (소위)양성	대학수준(4년)	국군간호사관 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단기복무 장교(소위)양성	대학수준(2년)	육군3사관 학교설치법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대학·대학원 수준	한국과학 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 (GIST)			광주과학 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대구경북과학 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울산과학 기술원법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에너지 과학 기술 고급인재 양성	대학·대학원 수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법
개별 설치법에 의한 국립학교	문화재청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	대학·대학원 수준	한국전통문화 대학교설치법
개별 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예술 종합학교	전문예술인 양성	대학·대학원 수준	한국예술종합 학교설치령

*자료: 「2025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교육부, 2025. 12.)

나. 조직(안 제3장)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3장(조직)은 한식대학교의 임원 및 의사결정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3장 조직	제3장 조직
제6조(임원) ①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식대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이사장은 한식대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식대학교의 업무와	⑦ 감사는 한식대학교의 업무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총장) ① 한식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식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총장) ① 한식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식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식의 세계화, 해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식의 세계화, 해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6.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거나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농어업·식품·한식·문화·외교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거나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농어업·식품·한식·문화·외교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¹⁵⁾

이에 따라 제정안은 임원의 구성과 선임 절차(제6조 및 제7조),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되(제8조),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는 유사 입법례와 유사함.

1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특수법인 대학 및 제정안의 조직 비교]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 에너지공대	제정안 (민형배·김석기의원안)
임원	- 이사 20명 이내 - 감사 1명	- 이사 15명 이하 - 감사 1명		
	정관에 따라 이사회 선임 (과기부장관 승인, 교육부장관 동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선임 (산업부장관 승인, 교육부장관 동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선임 (농식품부장관 승인, 교육부장관 동의)	
이사회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 - 감사 출석 및 의견진술 가능 -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의장 겸임 - 예결산, 임원의 선임·해임, 중요재산, 정관 변경, 규정 제·개정, 그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심의·의결			
평의원회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교원·직원·학생 등 -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연구(자문 한정), 교원·직원·학생 복지 등 심의			미규정
자문위원회	미규정			11명 이상 20명 이하 자문위원으로 구성 -농어업·식품·한식·문화·외교 분야 관련 전문가 -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연구, 교원·학생 복지 등 자문

다만,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9조는 다른 특수법인 대학과는 다르게 교육·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인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¹⁶⁾에서는 평의원회를 대학교의 필수적인 심

1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의 및 자문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함. 이는 평의회 제도가 대학 구성원이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취지임(헌재 2023.10.26. 2018헌마872 참조).

또한, 헌법¹⁷⁾이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는 점(헌재 2023.5.25. 2020헌마1336 참조)에서 평의회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현재 특수법인 대학들이 모두 평의회 설치의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식대학교에도 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대학교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동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 재무회계 등(안 제4장)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4장은 한식대학교의 사업연도, 출연금 지급 근거, 국유재산의 특례 등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4장 재무회계 등	제4장 재무회계 등
제10조(사업연도) 한식대학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연도) 한식대학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식대학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식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식대학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식대학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② 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식대학교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식대학교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15조(기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식대학교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식대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15조(기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식대학교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식대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10조는 한식대학교의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교법인의 사업연도 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 「고등교육법」의 학년도(學年度)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거나, ② 제정안과 같이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의 경우 사업연도와 학년도를 일치시키

고 있는 반면¹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및 과학기술원들의 경우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있음.

이는 국가의 예·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출연금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사업연도와 국가 회계연도를 일치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12조는 국가가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의 양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및 과학기술원들의 근거 법률에서도 국유재산특례 조항은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각기 상이한데, ① 과학기술원들은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②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설립에 필요한 경우 양여를, 운영에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특례를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음.

[특수법인 대학의 국유재산 특례]

구분	국유재산특례	공유재산특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 사용허가, 대부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 사용허가, 대부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생략)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1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설립에 필요시)양여 (운영에 필요시)무상 대부·사용·수익	(설립에 필요시)양여 (운영에 필요시)무상 대부·사용·수익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	(설립·운영에 필요시)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운영에 필요시) 양여, 무상 대부·사용·수익	-
제정안 (민형배·김석기안)	(설립·운영에 필요시) 양여, 무상 대부·사용·수익	-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예에 비추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에너지공대의 경우 법률 제정 전 이미 대학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양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원안에서 공유재산특례를 삭제한 것이나²⁰⁾, 한식대학교의 경우 소재 지역 및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재산 특례의 규정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 없이는 신설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특례 규정이 유효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²¹⁾.

셋째, 민형배의원안 제13조제3항은 결산서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20)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수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결안)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학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공유재산의 양여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며(안 제12조)...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속하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석기의원안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계감사 대상에서 국가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인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입법례에서도 동일하게 두고 있는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식 분야의 연구업무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과 그 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관한 측면과 함께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를 강화할 필요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연구시설·기기 등의 공동이용,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 수익사업, 발전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에너지공대, 과학기술원의 근거 법률에서도 해당 내용에 관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²²⁾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민형배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2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5조(기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의3(기부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7조의2(기부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0조(기부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4조의2(기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8조(기부 등)

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원들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음.²³⁾

따라서, 한식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원의 입법례 및 김석기의원안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3) 당초 과학기술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2.1.11.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학사 등(안 제5장)

민형배·김석기의원안 제5장은 교원 및 연구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교원의 임면, 교원인사위원회, 학생 및 학위과정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5장 학사 등	제5장 학사 등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식대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식대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식대학교에 한식 및 한식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② 한식대학교에 한식 및 한식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학생) ① 한식대학교의 학생 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 학생을 창의적 한식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기여·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학생) ① 한식대학교의 학생 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 학생을 창의적 한식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일정 기간 국내외 식품·외식 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이수를 졸업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일정 기간 국내외 식품·외식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하거나 현장실습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⑥ 총장은 현장실습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 ②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해외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대학의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해외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대학의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④ 한식대학교는 본교·분교·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설 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첫째, 민형배의원안 제23조는 한식대학교의 학위과정을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로 하고,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석기의원안 제23조는 한식대학교의 학위과정을 전문학사로 하고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 상 전문석사는 별개의 학위유형이 아닌 석사학위의 하부 유형에 해당²⁴⁾하므로, 전문

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석사를 석사과정과 별개로 명기할 필요성이 낮고, ②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의 통용성 및 일관성을 고려할 때 수업연한, 학기 등 학사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령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그런데,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대학에 대한 설치법은 해당 대학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로서 고등교육법 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아닌 각 소관부처의 장에게 대학 업무의 조정·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체계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각 소관 부처의 장이 해당 대학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고려할 때,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에 대해서는 민형배의원안의 규정과 같이 전문학사 학위과정 구분 및 학사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학사 관련 사항을 고등교육법 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및 과학기술원들은 고등교육법령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민형배의원안과 같이 학위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로 구분하고, 학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참고 입법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4조(학위과정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 <u>전문석사</u> ·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u>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u>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민형배·김석기의원안 제25조는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식대학교에 부설교육기관, 부설시설, 국외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제정안은 부설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위해 정관변경의 절차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총장이 부설교육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설교육기관 등이 남설된다면 국가예산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부설교육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관 인가절차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민형배·김석기의원안 제26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식대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자금 등 지원의 우대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학생이 한식대학교의 교육을 끝까지 완수할 유인을 높이고, 이후 관련 업계에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한식 분야의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학 학위를 이유로 다른 지원대상에 비하여 우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유사 학과 졸업생 등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²⁵⁾

25)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해전대학교 등 의견제출

참고로, 현재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근거 법률에는 졸업생 우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관 형태로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졸업생에 대한 지원 우대 규정을 두고 있음.

마. 보칙 및 벌칙(안 제6장 및 제7장)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이 법의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식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식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민법」의 준용) 한식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민법」의 준용) 한식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민형배의원안	김석기의원안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민형배·김석기의원의원안 제27부터 제30조까지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민법의 재단법인 관한 사항 규정 준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범죄행위로부터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규정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입법조치로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6장 보칙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417